

솔라테라스 동두천시 미니태양광 신청 방법

1. 접수 방법

- 서류 접수(원본서류 접수 원칙)
- 접수 주소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739-68(원흥동) 2층 솔라테라스 사무실, (우편번호) 10552

2. 서류 목록

- 참여신청서
- 보조금 반환에 관한 동의서
- (아파트인 경우) 관리사무소 동의서
- (세입자인 경우) 소유자 동의서
- 정보 제공 동의서
- 청렴이행서약서
-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임대인 포함)

3. 신청서 작성시 주의 사항

- 각 서류 하단의 인/서명 란은 반드시 서명이나 도장 날인(필수)
-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, 설치용량, 관리사무소 동의서, (세입자인 경우) 소유자 동의서는 필수
- 작성이 어려운란은 공란으로 기재

4. 상품별 제품 가격, 보조금, 자부담금(원)

- 경기도의 경우 누적 1000W까지 신청이 가능(예_23년 435W를 설치 후 24년 435W를 추가 설치 가능)

상품명	제품가격	보조금	자부담금
거치형 435W	900,000원	720,000원	180,000원
거치형 870W	1,800,000원	1,440,000원	360,000원
앵커형 435W	950,000원	760,000원	190,000원
앵커형 870W	1,900,000원	1,520,000원	380,000원

[별지 제1호 서식]

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(신청자용)				
신청인			연락처	
세부주소	(동 / 호수)			
주택형태	공동주택(), 단독주택()	설치용량	W	
설치장소	난간(), 옥상(), 기타()	전월전기사용량	kWh	
설치여건	방위각() 음영여부()	난간의 안정성		
설치기간	2024. . . ~ 2024. . . (사업기간 : 일)			
설치제품	거치형 / 앵커형 W (참여기업명 : 솔라테라스(주))			
설치비	총사업비	경기도보조금	동두천시보조금	자부담금
	원	원	원	원
<p>위와 같이 「2024년 동두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」 참여를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4. 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청 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참여기업 솔라테라스 주식회사</p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 <p>(서명)</p>  </div> <p>경기도지사 및 동두천시장 귀하</p>				
<p>첨부서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동의서 (공동주택 관리소장용) 1부. [별지 제1-1호 서식] 2.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동의서 (임대인 및 임차인용) 1부. [별지 제1-2호 서식] ※ 해당 시 3.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정보제공 동의서 (신청자용) 1부. [별지 제1-3호 서식] 4.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(신청자용) 1부. [별지 제2호 서식] 5. 본인서명사실확인서 (서명 확인용) 1부. 6.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. 				

미니태양광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

[신청자 및 참여기업용]

- 참여업체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신청인이 5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, 해당 시·군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경기도 및 시·군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태양광 설비의 사용기간(설치완료일 포함)에 따라 환수율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반환명령 합니다.
 - 사용기간은 설치완료일을 포함합니다.
- 사용기간 1개월 미만으로 철거하는 경우는 보급업체가 보조금을 반환 명령 합니다.
- 다음과 같은 사항은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 - 시공기준 미준수 등 보급사업 공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에게 이미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.
 -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 처분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.
 - 관련 법, 보급사업 공고 등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.
 - 단, 설비 소유자가 거주지를 이전 시 양도 및 이전설치가 불가할 경우 보조금을 미반환 할 수 있습니다.

동두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자(신청인, 참여기업)는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.

2024. . .

신 청 자

(서명)

참여기업 솔라테라스(주)



경기도지사 및 동두천시장 귀하

[별지 제1-1호 서식]

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동의서 [공동주택 관리소장용]

공동주택명		연락처	
신청인		연락처	
세부주소	(동 / 호수)		
참여기업명	솔라테라스 주식회사		

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2항제5호 및 「경기도 공동주택관리
규약 준칙」 제53조제4호에 따라 상기 신청인의 「2024년 동두천시 미니
태양광 보급지원사업」 신청 및 설치에 동의합니다.

2024. . .

(공동주택명) 관리소장 (인)

경기도지사 및 동두천시장 귀하

[별지 제1-3호 서식]

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정보제공 동의서 [신청자용]

「2024년 동두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」 참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하니,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항목>

○ 수집항목 : 성명, 연락처, 주소, 전월전기사용량(kWh), 계좌번호, 예금주, 생년월일, 전자메일, 설비설치 현황 및 설치 사진

<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>

○ 성명, 연락처, 주소, 전월전기사용량(kWh), 생년월일, 전자메일, 설비설치 현황 및 설치 사진

- 보조금 지원 기준 적합·중복 참여 여부 등 확인 목적
- 사업 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목적
-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등 원활한 운영 목적
-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연구·통계자료에 활용 목적
- 설비 운영 현황 수집 및 사업홍보 활용 목적
-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 상황(태풍, 호우 등) 관련 안내문자 통보 목적

○ 계좌번호, 예금주

- 보조금 지급 목적
- 재난상황 관련 안내문자 통보

<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>

○ 정보 주체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 시에는 참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.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2024. . .

신청자(동의인) :

(서명)

경기도지사 및 동두천시장 귀하

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[신청자용]

-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동두천시로부터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동두천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.
- 아울러,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동두천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「지방재정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 벌칙 규정 (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) >

-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**제37조(벌칙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1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
 2. 제28조의4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자**제38조(벌칙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1.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
 2.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
 3.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**제39조(벌칙)**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1. 제16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
 2. 제16조 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
 3. 제17조 또는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**제40조(양벌규정)**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24. . .

신청자(서약자)

(서명)

경기도지사 및 동두천시장 귀하